

5. 환경영향평가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877호 1999. 2. 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도록 하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후단중 “지정받은 사항”을 “등록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를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

다”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형의 신고”를 “실형의 신고”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지정취소등”을 “등록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지정”을 각각 “등록”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지정을 받은”을 “등록한”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지정서를”을 “등록증을”로 하며, 동조제5호중 “지정요건”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지정받은”을 “등록한”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지정”을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지정취소”
를 각각 “등록취소”로 한다.

제23조제4항중 “자격기준·준수사항”을 “자
격기준”으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32조중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
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평가대행자는 제11조·제
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등
록취소된 평가대행자로 본다.
-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